

LPG輸入事業의 產業合理化計劃案

—產業政策審議會—

1. 議決主文

LPG(液化石油ガス) 輸入事業의 產業合理化計劃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2. 提案理由

- 가. LPG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생산능력의 한계로 이의 수입의존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나. 현재 LPG의 수입은 正友에너지(株)가 거의 전담하고 있으나, 正友開發(株)는 當該社가 소유하고 있는 正友에너지(株)의 주식을 賣渡하려 하고 있음.
- 다. 이에 정부는 LPG를 장기 안정적이고 低價로 수입, 공급할 수 있도록 LPG 수입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輸入LPG 실수요자인 精油社등이 참여, 공동수입회사로 되는 麗水에너지(株)로 하여금 正友에너지(株)의 주식을 買收, 흡수합병토록하여 LPG 輸入窗口를 一元化하고자 함.

이는,

첫째, 수입물량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示顯함과 아울러 대외교섭력을 제고시켜 소비자가격인하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輸入LPG 실수요자에게 共同輸入會社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입을 공동수입 회사에 전담시킴으로써 LPG輸入을 둘러싼 과

당경쟁을 해소하며,

세째, 精油社가 관련산업에 참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하고,

네째, 共同輸入會社로 하여금 LPG 비축을 추진케 함으로써 石油危機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라. 이와 같은 LPG輸入事業의 조정은 LPG의 소비자가격인하기반 조성으로 국민생활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산업합리화에 副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LPG 共同輸入會社로 되는 麗水에너지(株) 및 正友에너지(株)를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합리화대상 기업으로 각각 지정하고자 함.

3. 主要骨子

- 가. 麗水에너지(株) 및 正友에너지(株)를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각각 지정함.
- 나. 지정기업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第46條 및 第48條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별조치를 함.

4. 參考事項

- 가. 관계법령 : 租稅減免規制法 및 液化石油ガス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合議 :
- 라. 기타 :

LPG輸入事業의 產業合理化計劃案

I. LPG輸入体制현황

1. 長期需給전망

(單位 : 千噸)

	83	84	86	90	96
需 要 生 產	892	1,035	1,468	2,725	3,268
輸 入	541	555	597	691	788
(輸入依存度%)	351	480	871	2,034	2,480
	(39.3)	(46.4)	(59.3)	(74.6)	(75.9)

2. 輸入狀況

● 現行輸入業者 및 수입물량

(單位 : 千噸)

	83	84(1~8月)
計	351(100 %)	298(100 %)
正友에너지(株)	318(90.6%)	282(94.5%)
精油社	33(9.4%)	16(5.5%)

● 正友에너지(株)가 우선 수입하게 된 이유

- 사우디 Petromin과의 장기계약체결 및 계약조건(Take or Pay) 이행
- 국내 유일의 대형저장기지(麗川기지 : 152千噸) 보유
- 따라서 精油社 등 他輸入業者는 正友의 수입 물량이 消盡된 후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만 수입 가능.

II. 現행輸入体制의 문제점

- 국내판매능력과 수입물량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
- 輸入LPG실수요자인 精油社의 자체수입권 제한으로 精油社의 경영합리화 저해
- 수입참여쪽의 제한으로 수입권을 利權으로 오해하는 일부 여론
- 신규수입업자가 소규모로 난립하는 경우

- 경제규모의 미달로 소비자가격 인상요인 초래 (高價도입, 수송비 및 저장비용 과다)
- 產油國에 대한 대외교섭력 약화
- 투자비조달능력의 제한으로 새로운 貯藏基地 건설기대 곤란

III. LPG輸入사업의 產業合理化 추진계획

1. 產業合理化對象企業의 지정

LPG를 장기 안정적이고 低價로 수입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부담을 경감하게 함과 아울러 國家基幹產業인 精油社로 하여금 관련산업인 LPG輸入事業에 참여,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LPG共同輸入會社로 되는 麗水에너지(株) 및 흡수 합병되는 正友에너지(株)를 租稅減免規制法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각각 지정함.

2. 合理化 기본방향

- 가. 輸入LPG 실수요자인 精油社 등에 의한 LPG共同輸入會社를 설립, LPG 輸入窓口를 일원화
- 수입물량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示顯, 소비자가격인하기반 조성
- 산유국에 대한 대외교섭력 제고
- 輸入LPG 실수요자의 수입참여기회 확대로 수입을 둘러싼 경쟁 해소
- 精油社의 경영합리화 도모
- LPG 민간지출의 효율적 추진
- 나. 共同輸入會社 외에는 LPG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새貯藏基地를 필요로 할 때에는 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기 위하여 別個의 공동수입회사를 설립

3. 合理化기준

- 가. 麗水에너지(株)를 LPG共同輸入會社 형태로

개편

- 機能 : L.P.G 輸入, 수송, 저장관리 및 판매
- 참여대상 : 精油社 및 참여희망 L.P.G 유통업체
- 나. 正友開發(株)는 當該法人이 소유하고 있는 正友에너지(株)의 주식을 麗水에너지(株)에 양도
- 다. 麗水에너지(株)는 위의 주식을 양수한 후 正友에너지(株)를 1985. 5. 31까지 흡수합병
- 正友에너지(株)와 사우디 Petromin과의 L.P.G 공급계약 承繼
- 正友에너지(株)의 직원(任員 제외)은 원칙적으로 인수

4. 合理化指定企業에 대한 稅制지원

- 가. 合理化指定企業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譲受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租稅減免規制法 第46條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을 면제한다.
- 麗水에너지(株)에 대하여는 正友에너지(株)의 주식 취득에 따른 取得稅와 正友에너지(株)를 흡수 합병함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 한다.
- 나. 이 계획에 의하여 합병후 소멸되는 正友에너지(株)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 第48條의 규정에 의하여 清算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면제하며, 同法施行令 第41條의 규정에 의한 主務部長官과 財務部長官과의 합의는 本審議

會의 의결로 가름한다.

5. 效果

- 가. 輸入L.P.G 소비자가격 인하기반 조성으로 국민 생활의 부담을 경감
- 나. 精油社의 경영합리화를 도모, 국민경제안정에 기여

〈參考〉

1. 合理化 추진일정

- 84. 9. 6. : 麗水에너지(株) 설립 등기
- 84. 9. 7 : 精油社長團會議에서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
- 85. 1 월까지 : 麗水에너지(株)와 正友開發(株) 간에 正友에너지(株)의 주식매매 本契約 체결
- 85. 5. 31까지 : 正友에너지(株) 흡수 합병

2. 麗水에너지(株) 설립계획

- 事業 : L.P.G 輸入契約, 수송, 저장, 廉藏基地 운영 및 판매
- 참여대상 : 精油社 및 참여희망 L.P.G 유통업체
- 資產 : 1,200億원
- 自己資本 : 240億원 *

□ 石油需要展望 □

85년 OPEC 原油需要 하루 1,800배럴

OPEC原油에 대한 수요는 85年 1/4 분기에 1,800만b/d로 금년 4/4분기의 1,670만b/d보다 130만b/d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최근에 발간된 國際エネルギー機構(IEA)의 월간 石油市場報告書(OMR)가 밝혔다.

IEA의 전망에 의하면, 1/4분기 자유세계 石油需要는 금년 4/4분기의 4,740만b/d보다 120만b/d가 증가한 4,860만b/d가 될 것이며 동시에 非OPEC의 石油供給은 2,800만b/d에서 약간 감소된 2,780만b/d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나머지 2,080만b/d가 OPEC生產

과 在庫油 방출로 충당될 것인데 OPEC의 천연가스液(NGL) 生產을 130만b/d, 在庫油 방출을 150만b/d로 가정하면 OPEC原油에 대한需要는 1,800만b/d가 된다.

IEA는 85年 1/4분기 1,800만b/d의 對 OPEC石油需要는 OPEC會員國들이 그들의 생산쿼터를 준수한다면 國際石油市場에서 유가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나 많은 OPEC會員國들이 그들의 쿠터를 계속 위반할 것 같기 때문에 油價 強勢현상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